# 보수규정 시행세칙

```
제 정
         2007. 1. 15
         2007. 5. 1
개 정(1)
   정(2)
개
         2008. 9. 4
   정(3)
개
         2008. 10. 17
   정(4)
         2009. 10. 14
개
   정(5)
         2011.
               1. 3
개
         2011. 2. 9
개
   정(6)
   정(7)
         2014.
               3. 3
개
   정(8) 2014. 6.20
개
   정(9) 2014. 7.24
개
   정(10) 2014. 12. 31
개
   정(11) 2015. 6. 30
개
   정(12) 2015. 10. 1
개
   정(13) 2015. 12. 18
개
개
   정(14) 2016. 4. 6
   정(15) 2016. 4. 29
개
개
   정(16) 2017. 7. 7
   정(17) 2018. 12. 13
개
개
   정(18) 2019. 10. 23
개 정(19) 2020. 6.24
개
   정(20) 2021. 12. 20
개 정(21) 2023. 10. 16
개 정(22) 2024. 12. 17
개 정(23) 2025. 2. 25
```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보수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장 보 수

- 제2조(지급일) ①월기준급은 매월 21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 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.
  - ②업적급은 평가세칙에 따른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개인성과 및 공사 성과를 반영하여 직급별, 직군별로 차등 지급하되, 평가대상기간 익년도 3월말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3장 지급기준

- 제3조(계산기간) ①월기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한다. ②업적급은 1년을 계산기간으로 한다.
- 제4조(보수계산) ①월기준급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.
  - ②보수는 채용, 휴직, 복직, 승진, 정직, 감봉, 기타 여하한 경우에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  - ③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(유급휴일 포함)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월기준급 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거나 징계에 의거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④규정 제4조 제1항의 기본급에는 매월 20만원의 중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.
  - ⑤업적급과 초과수익 인센티브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, 1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  - ⑥기본급 인상시 상하위 등급자간 기본급 인상률의 차등 폭을 평균  $3\%p(\pm 1.5\%p)$ 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. 다만, 최하 등급자의 기본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  - ⑦직무급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제5조(보수의 제한) 대기발령자에게는 기준급의 70/10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제6조(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) 휴직,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를 위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 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겸직자의 보수) 직원이 본직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하는 때의 그 겸직에 대

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제8조(파견자 등에 대한 보수) 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하되, 파견기관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. 그러나 가족을 동반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9조(휴직자의 보수)** ①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 휴직자의 보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기준에 따른다.
  - ② 기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기준급의 25/100을 지급한다.
  - ③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자비유학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- ④외국에서의 근무,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- ⑤천재지변, 사변 등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- ⑥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, 배우자,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징계자의 보수) 정직, 감봉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  - ①정직자 : 부지급(해당기간 월정급여 및 업적급)
  - ②감봉자 : 감봉 1회당 월기준급의 1일분의 50/100 감액 지급
- 제11조(휴가자의 보수) 휴가세칙의 규정에 의한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단, 여직원의 생리로 인한 특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- 제12조(신규직원의 보수) 신규직원의 채용시 보수책정은 개인의 경력, 군경력, 직무의 종류,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직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3조(승진자의 보수) 승진자의 보수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4조(보수의 조정) ①보수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역량 및 업적을 종합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.

- ②기준급 조정은 시장값을 반영하여 조정하되,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조정률에 차이를 둘 수 있다.
- ③일반직원이 만58세에 도달한 달이 속한 반기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만 60세에 도달한 달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기준급을 하향 조정하되, 하향 조정 금액은 해당시점 직전 기준급의 75%로 한다. 다만 조정금액이 당해연도 신입직원의 연가 보수수준을 하회하는 경우 추가 조정한다.
- 제15조(시간외근무수당) ①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수 행을 위하여 각부서장이 인정한 시간외근무의 경우에 한한다.
  - 1. 국회, 정부 및 기타 대외기관에서 요청한 업무
  - 2. 급여, 결산 및 가결산업무
  - 3. 대내외 감사 수감 및 자료 준비
  - 4. 업무성격상 특정시간 또는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시간외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5. 기타 부서장이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  - 1. 예비군 및 민방위대와 관련하여 근무하게 된 때
  - 2. 각종 출장, 연수 및 대내외행사를 위하여 근무하게 된 때
  - ③제1항에 의한 시간외근무중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매 시간에 대하여 209분의 1.5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. 단, 야간근무(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)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상기 시간외근무수당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제16조(직책수당) 직제규정 상 직책이 부여된 직원에 대하여는 월기준급과는 별개로 직책수당을 월 500,000원씩 지급한다. 단, 직책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**제16조의2(연차수당)** ①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.
  - ②퇴직 직원에 대하여도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.
  - ③연차수당은 매일수에 대하여 8시간,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12로 나는 금액을 기준으로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  - ④연차수당은 12월 중에 지급한다.

- 제16조의3(자녀수당) ①자녀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.
  - ②동일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정부 및 공기업, 공공기관 등에서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  - ③자녀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
#### 제4장 업 적 급

- 제17조(업적급의 지급) ①업적급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 업적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업적급의 보수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 직군 및 직급별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, 매년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
- 제18조(지급대상 및 기준) ①업적급은 평가대상기간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.
  - ②업적급은 평가대상기간 최종일의 기준급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  - ③업적급의 기준비율은 직원의 역할 및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.
  - ④해당년도 업적에 따라 결정되는 업적급의 총액이 4천만원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 - ⑤업적급은 평가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성과가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최고-최저 등급자간 차등폭을 최소 2배 이상으로 한다.
- 제19조(장기업적급의 지급) ①장기업적급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 업적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장기업적급은 업적급의 잔여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장기업적급은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후 실근무연수가 3년이 되는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.

### 제5장 초과수익 인센티브

- 제20조(초과수익 인센티브의 지급) ①초과수익 인센티브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 평 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초과수익 인센티브는 당사의 성과수수료 및 절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(지급대상 및 기준) ①초과수익 인센티브는 투자운용부문 직원에 한하여 초과성과 창출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한다.

②초과수익 인센티브 지급액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# 제6장 해외현지직원의 보수

제22조(해외현지직원의 보수) 해외현지직원의 보수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
##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. 1. 15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. 5. 1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. 9. 4 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3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세칙은 2008. 10. 17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. 10. 14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1. 1. 3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1. 2. 9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7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. 3. 3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8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. 6. 20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9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. 7. 24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10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. 12. 31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1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. 6. 30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1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. 10. 2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1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. 12. 23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1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. 4. 5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 부 칙(1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. 4. 29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1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. 7. 10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17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. 12. 13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에 대한 사항은

2019. 1. 1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(18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. 10. 23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19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. 7. 1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. 12. 20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3. 10. 16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4항에 대한 사항은 2023. 1.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## 부 칙(2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. 1. 1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. 1. 1 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### <별표1>

# <u>자녀수당표</u>

자녀 구분	월 지급액
첫째 자녀	<u>50,000원</u>
둘째 자녀	<u>80,000원</u>
셋째 이후 자녀 1명당	<u>120,000원</u>